

2010년 환경행정, 어떻게 달라질까?

2010년 1월부터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에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이 확대 적용되고, 유해대기물질인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신설되어 시행되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4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또한 삶의 질과 밀접한 소음 환경에 대하여 규제중심의 행정에서 관리의 개념으로의 변화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이 된다. 2010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관계부서
벤젠의 대기환경기준 신설		*벤젠의 연간 평균농도는 5 $\mu\text{g}/\text{m}^3$ 이내로 유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0. 1. 1)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2-2110-6778
조기폐차 지원제도 저소득층 지원확대	보조금 산정방법 변경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 *일반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기준 80%, 저소득층은 90% 산정(상한금액은 종전과 동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10. 1. 1)	환경부 교통환경과 02-2110-6857
	대상확인 방법	*중고자동차 성능 전검기록부로 운행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 *전문기관에서 직접 확인한 성능점검 결과표로 확인		
	기타 신설	- *재활용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활용율이 높은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우선배정		

New 2010 Administration in Environmental Reform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관계부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 허용기준 변경	*배출시설 분류 : 15개 시설군	*배출시설 분류 : 28개 시설군	대기환경보전법 ('10. 1. 1)	환경부 대기관리과 02-2110-6798
	*가스상 물질(18종) 및 입자상 물질(9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가스상 물질(17종) 및 입자상 물질(9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일부 시설의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 염화비닐, 먼지, 벤젠 수은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조정·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확대·시행	*대기총량관리제 시행 - 대상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NOx(30톤/년 초과), SOx(20톤/년 초과), 117개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 대상 :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 NOx(4톤/년 초과), SOx(4톤/년 초과), 약 350개 사업장 ▶환경부>보도자료>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확대 시행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08. 11)	환경부 대기관리과 02-2110-6789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소지자 신규 배출 (시험·검사기관 등의 기술인력 기준)	*기술인력 - (관련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분석요원)	*기술인력 - (관련분야의) 기술사, 측정분석사(수질),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분석요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9. 7. 2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9. 7. 13)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09. 7. 13)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 02-2110-6684, 668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관계부서
재활용의무대상 필름류 포장재 확대	<p>*1회용 봉투, 의복류·위생용 종이 제품·가정용 고무장갑·전기/전자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류 포장재 → 폐기물부담금 대상</p> <p>*현행 재활용의무 대상 필름류 포장재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의약품 등을 포장하는 필름류 포장재</p>	<p>*1회용 봉투, 의복류·위생용 종이제품·가정용 고무장갑·전기/전자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류 포장재를 재활용의무대상(EPR)으로 전환</p>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0.1.1)</p>	<p>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49</p>
소음지도	<p>*소음지도 작성근거 신설</p>	<p>*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음</p>		
공사장소음 측정기	<p>*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근거 신설</p>	<p>*시·군·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p>		
철도차량 소음기준	<p>*철도차량 제작차에 대한 소음권고 기준 신설</p>	<p>*환경부장관은 제작시의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 제작자 또는 수입자에게 이에 적합한 차량을 제작·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p>		
행정절차 간소화	<p>*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한 공장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설치 후 가동하려면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p>	<p>*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시 통합하여 신고하도록 변경</p>	<p>소음·진동규제법 개정('09. 6. 9)</p>	<p>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814</p>
행정벌칙	<p>*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는 자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p> <p>*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p> <p>*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p>	<p>*1,000만원으로 상향조정</p> <p>*500만원으로 상향조정</p> <p>*200만원으로 상향조정</p>		

New 2010 Administration in Environmental Reform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관계부서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기관 확대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 대상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 사용 건설공사 대상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환경부 > 보도자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 6. 10)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6932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입력 의무화 시행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종이로 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환경부 > 보도자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 6. 10)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6932
--------------------------	---	---	-----------------------------------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관계부서
		등급		COD(mg/L)	T-P(mg/L)		
하천 생활환경기준에 COD 및 TP 확대 적용	* 신 설 *	매우 좋음	Ia	20이하	0.02이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10. 1. 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좋음	Ib	40이하	0.04이하		
		약간 좋음	II	50이하	0.10이하		
		보통	III	70이하	0.20이하		
		약간 나쁨	IV	90이하	0.30이하		
		나쁨	V	110이하	0.50이하		
		매우 나쁨	VI	11초과	0.5초과		